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

<b>허용분야</b>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①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D-2-7)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b>허가제한분야</b>	전문분야(E-1~E-7) 활동범위, 제조업, 건설업, 어선원,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개인 과외교습,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등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원거리 근무(지방 최대 60 분 이내 거리) 등 ※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 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 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 2 과정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b>대상</b>	<b>D-2 (학부)</b>		<b>D-4 (어학연수)</b>				
<b>허용시기</b>	입학 첫 학기부터 가능,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체류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b>허가기간</b>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장소 최대 2곳에 한정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장소 최대 1곳에 한정				
<b>허가기준</b>	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이상 ※ 입학 이후 첫 학기 수강 중인 자료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b>학년</b>	<b>한국어능력수준</b>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b>허가시간</b>	<b>한국어능력수준</b>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b>허가시간</b>		
	1~2 학년	① 3급 ②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X  O	1주 10시간  1주 25시간 (성적우수 or 한국어우수의 경우 30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X	1주 10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X  O	1주 10시간  1주 25시간 (성적우수 or 한국어우수의 경우 30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O	1주 20시간 (성적우수, 한국어우수의 경우 25시간)
	※ '성적우수'는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4.0) 이상, '한국어우수'는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 평가 합격한 사람을 의미, 해당자에게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한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동안 허용 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고' 취업활동 가능 ※ (영어트랙과정 입학자)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 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시간제취업 허가기준은 추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에 따라 변경되거나 상이 할 수 있음						

<b>신청방법</b>	신청 서류 준비 → 사무실 방문 → 대학 담당자 서명 → 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 허가 승인 확인 후 근무								
<b>신청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li> <li>-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li> <li>-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유효 기관이 도과한 TOPIK 성적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li> <li>-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li> <li>-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li> </ul> </li> <li>- 사업자 등록증 사본</li> <li>-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 시급 및 근무 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li> </ul>								
<b>주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반드시 시간제취업 신청 및 허가승인을 받아야함</li> <li>※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 장소가 <b>변경</b>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li> <li>※ 허가기간 내 취업 장소가 변경 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고 해야함</li> <li>※ 허가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 엄중 경고, 시간제 취업 불허, 유학 자격 취소. 강제 퇴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연계 유학생(D-2-7)의 전문분야(E-1~E-1) 인턴 활동 허용(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 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li> </ul> </li> <li>- 방학 기간에 한하여, 학위과정 유학생(D-2)의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허용(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유학(D-2-5) 제외</li> </ul> </li> <li>- 현장실습 활동</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0 1200 774 141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구분</th> <th style="padding: 5px;">면제 가능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표준 현장실습</td> <td style="padding: 5px;">시간제 취업허가 면제</td> </tr> <tr> <td style="padding: 5px;">필수 현장실습</td> <td style="padding: 5px;">시간제 취업허가 면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자율 현장실습</td> <td style="padding: 5px;">시간제 취업허가 필요</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제 가능 여부	표준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필수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자율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구분	면제 가능 여부								
표준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필수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자율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